|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자산(지분)양도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0호  <국무원의 기업합병·구조조정 시장환경을 한층 최적화하기 위한 의견> (국발[2014]14호) 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 촉진에 관한 통지>(재세[2014]109호), 이하<통지>)발표 후, 각 지역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소득세 정책집행 과정 중 일부 징수관리 문제를 계속 반영하고 있어 신속히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거쳐, 지분 또는 자산양도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100% 직접 지배하는 거주자 기업간 및 동일하거나 서로같은 여러 거주자기업이 100% 직접 지배하는 거주자 기업간은 액면가액에 따라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한다"는 아래의 경우에 한한다.  (1) 100% 직접 지배하는 구조인 모회사와 자회사간은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의 100% 지분 보상을 획득한다. 모회사는 장기지분투자의 증가로 처리하고, 자회사는 투자 받은 것으로(자본잉여금 포함, 하동) 처리한다. 모회사가 획득한 자회사 지분의 과세표준은 양도한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과세기초로 확정한다.  (2) 100% 직접 지배하는 모자회사 사이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모회사는 어떠한 지분 또는 비지분 보상을 획득하지 않는다. 모회사는 납입자본금과 상계하여(자본잉여금 포함, 하동)감액 처리하고, 자회사는 투자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3) 100% 직접 지배구조인 모자회사 사이 자회사는 모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회사는 어떠한 지분 또는 비지분 보상을을 획득하지 않는다. 모회사는 투자회수로 처리하거나 또는 투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자회사는 납입자본금과 상계하여 감액 처리한다. 모회사는 피지분 또는 자산 양도의 원 과세기초에 따라 보유하는 자회사지분의 과세기초를 상응하여 조정한다.  (4) 동일하거나 서로 같은 여러 모회사의 100% 직접 지배를 받는 자회사 사이 모회사의 주도 아래, 자회사는 또 따른 자회사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보유한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기업은 어떠한 지분 또는 비지분 보상을 획득하지 않는다. 양도측은 자기자본과 상계하여 감액처리하고, 양수측은 투자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2.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지분 또는 자산 양도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피양도한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분 또는 자산 양도가 완료된 날로부터 연속 12개월 이내에 피양도한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지분 또는 자산 양도 완료일은 지분 또는 자산 양도 계약서(협의서) 또는 회답문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가리키며, 또한 거래쌍방이 회계 처리한 일자를 가리킨다.  3.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는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장부가액으로 확정한다."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가리키며,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과세기초로 확정한다.  <통지> 제3조에서 일컫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자산은 기존의 장부가액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계산한다."는 양수기업이 취득한 피양도 자산을 가리키며, 피양도 자산의 기존 과세기초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세무처리의 지분 또는 자산양도를 진행하고, 거래쌍방은 협상 일치 기초하에 일치 처리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특수한 세무처리를 한다.  5. 거래쌍방은 기업소득세 연도 결산 시,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거주자기업의 특수한 자산(지분)양도 세무처리 신청서> (첨부 참조)와 관련 자료(1식 2부)를 제출한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지분 또는 자산 양도의 전체적인 상황 설명, 기본정보, 양도방안 등 포함 및 상세하게 설명한 양도의 상업목적.  (2) 거래쌍방 또는 다자간 체결한 지분 또는 자산 양도 계약서(협의서)에 권한을 가진 부문(내부와 외부 포함)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준문건 제공  (3)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 액면가액과 과세표준의 설명  (4) 거래쌍방은 액면가액에 따라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한 설명(회계처리 자료 첨부 필요함)  (5) 거래쌍방이 모두 회계 상 손익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설명(회계처리 자료 첨부 필요함)  (6) 12 월 내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의 기존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승낙서.  6. 거래쌍방은 지분 또는 자산양도 완료 후 다음년도의 기업소득세 연도신고 시, 각각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상황설명서를 제출하고, 피양도 지분 또는 자산 양도완료일로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기존의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7. 거래 일방은 지분 또는 자산양도 완료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생산경영업무, 회사업종, 자산 또는 지분구조 등 상황변경으로 지분 또는 자산양도의 특수한 세무처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변경사항의 거래일방은 변경상황이 발생한 30일 이내에 그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일방에게 통지한다. 일방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그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8. 본 공고 제7조에서 상술한 변동상황 발생 후 60일 이내에 기존 거래쌍방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  (1) 본 공고 제1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는 기존의 양도 완료 시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또한 공정가액에 따라 취득한 장기 지분투자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자회사는 공정가액에 따라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본 공고 제1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는 기존의 양도 완료시기의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자회사는 공정가액에 따라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본 공고 제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회사는 기존의 양도 완료 시의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모회사는 투자철회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본 공고 제1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측은 기존의 양도 완료시의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판매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모회사는 거래정황과 회계처리에 근거하여 양도측에 대해 주식 배당금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투자철회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양수측은 지분 또는 자산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를 처리한다. 양수측은 모회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며, 공정가액으로 양수한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확인한다.  (2) 거래쌍방은 양도 완료한 납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관련 지분 또는 자산의 과세기초를 조정해야 하며,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양도 완료한 납세연도의 기업소득세연도 보고서에 조정신청을 하고, 법에 따라 납부할 기업소득세를 계산한다.  9. 거래쌍방의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특수한 세무처리를 적용할 지분 또는 자산양도 신고에 대하여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10. 본 공고는 2014년도 및 이후 기업소득세 연도결산 납부에 적용한다. 이전에 아직 세무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지분 또는 자산양도가 <통지> 제3조와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거주자기업의 특수한 자산(지분)양도 세무처리 신청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653005/part/1653024.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5월27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资产（股权）划转企业所得税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40号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企业兼并重组市场环境的意见》（国发〔2014〕14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企业重组有关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财税〔2014〕109号，以下简称《通知》）下发后，各地陆续反映在企业重组所得税政策执行过程中有些征管问题亟需明确。经研究，现就股权或资产划转企业所得税征管问题公告如下：  　　一、《通知》第三条所称“100%直接控制的居民企业之间，以及受同一或相同多家居民企业100%直接控制的居民企业之间按账面净值划转股权或资产”，限于以下情形：  　　（一）100%直接控制的母子公司之间，母公司向子公司按账面净值划转其持有的股权或资产,母公司获得子公司100%的股权支付。母公司按增加长期股权投资处理，子公司按接受投资（包括资本公积，下同）处理。母公司获得子公司股权的计税基础以划转股权或资产的原计税基础确定。  　　（二）100%直接控制的母子公司之间，母公司向子公司按账面净值划转其持有的股权或资产，母公司没有获得任何股权或非股权支付。母公司按冲减实收资本（包括资本公积，下同）处理，子公司按接受投资处理。  　　（三）100%直接控制的母子公司之间，子公司向母公司按账面净值划转其持有的股权或资产，子公司没有获得任何股权或非股权支付。母公司按收回投资处理，或按接受投资处理，子公司按冲减实收资本处理。母公司应按被划转股权或资产的原计税基础，相应调减持有子公司股权的计税基础。  　　（四）受同一或相同多家母公司100%直接控制的子公司之间，在母公司主导下，一家子公司向另一家子公司按账面净值划转其持有的股权或资产，划出方没有获得任何股权或非股权支付。划出方按冲减所有者权益处理，划入方按接受投资处理。  　　二、《通知》第三条所称“股权或资产划转后连续12个月内不改变被划转股权或资产原来实质性经营活动”，是指自股权或资产划转完成日起连续12个月内不改变被划转股权或资产原来实质性经营活动。  　　股权或资产划转完成日，是指股权或资产划转合同（协议）或批复生效，且交易双方已进行会计处理的日期。  　　三、《通知》第三条所称“划入方企业取得被划转股权或资产的计税基础，以被划转股权或资产的原账面净值确定”，是指划入方企业取得被划转股权或资产的计税基础，以被划转股权或资产的原计税基础确定。  　　《通知》第三条所称“划入方企业取得的被划转资产，应按其原账面净值计算折旧扣除”，是指划入方企业取得的被划转资产，应按被划转资产的原计税基础计算折旧扣除或摊销。  　　四、按照《通知》第三条规定进行特殊性税务处理的股权或资产划转，交易双方应在协商一致的基础上，采取一致处理原则统一进行特殊性税务处理。  　　五、交易双方应在企业所得税年度汇算清缴时，分别向各自主管税务机关报送《居民企业资产（股权）划转特殊性税务处理申报表》（详见附件）和相关资料（一式两份）。  　　相关资料包括：  　　1.股权或资产划转总体情况说明，包括基本情况、划转方案等，并详细说明划转的商业目的；  　　2.交易双方或多方签订的股权或资产划转合同（协议），需有权部门（包括内部和外部）批准的，应提供批准文件；  　　3.被划转股权或资产账面净值和计税基础说明；  　　4.交易双方按账面净值划转股权或资产的说明（需附会计处理资料）；  　　5.交易双方均未在会计上确认损益的说明（需附会计处理资料）；  　　6.12个月内不改变被划转股权或资产原来实质性经营活动的承诺书。  　　六、交易双方应在股权或资产划转完成后的下一年度的企业所得税年度申报时，各自向主管税务机关提交书面情况说明，以证明被划转股权或资产自划转完成日后连续12个月内，没有改变原来的实质性经营活动。  　　七、交易一方在股权或资产划转完成日后连续12个月内发生生产经营业务、公司性质、资产或股权结构等情况变化，致使股权或资产划转不再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的，发生变化的交易一方应在情况发生变化的30日内报告其主管税务机关，同时书面通知另一方。另一方应在接到通知后30日内将有关变化报告其主管税务机关。  　　八、本公告第七条所述情况发生变化后60日内，原交易双方应按以下规定进行税务处理：  　　（一）属于本公告第一条第（一）项规定情形的，母公司应按原划转完成时股权或资产的公允价值视同销售处理，并按公允价值确认取得长期股权投资的计税基础；子公司按公允价值确认划入股权或资产的计税基础。  　　属于本公告第一条第（二）项规定情形的，母公司应按原划转完成时股权或资产的公允价值视同销售处理；子公司按公允价值确认划入股权或资产的计税基础。  　　属于本公告第一条第（三）项规定情形的，子公司应按原划转完成时股权或资产的公允价值视同销售处理；母公司应按撤回或减少投资进行处理。  　　属于本公告第一条第（四）项规定情形的，划出方应按原划转完成时股权或资产的公允价值视同销售处理；母公司根据交易情形和会计处理对划出方按分回股息进行处理，或者按撤回或减少投资进行处理，对划入方按以股权或资产的公允价值进行投资处理；划入方按接受母公司投资处理，以公允价值确认划入股权或资产的计税基础。  　　（二）交易双方应调整划转完成纳税年度的应纳税所得额及相应股权或资产的计税基础，向各自主管税务机关申请调整划转完成纳税年度的企业所得税年度申报表，依法计算缴纳企业所得税。  　　九、交易双方的主管税务机关应对企业申报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股权或资产划转加强后续管理。  　　十、本公告适用2014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此前尚未进行税务处理的股权、资产划转，符合《通知》第三条和本公告规定的可按本公告执行。  　　特此公告。  　　附件：居民企业资产（股权）划转特殊性税务处理申报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653005/part/1653024.doc>  　国家税务总局  2015年5月27日 |